명예기자 활동비 지급 규정

제정 2020년 04월 11일
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부식방식학회(이하 “학회”이라 한다)의 명예기자(학생)의 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예기자의 위촉 등)
① 명예기자는 일정기간 동안 공모하여 접수된 지원서를 사업위원회에서 검토 후 선발하되,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승인받아 위촉한다.
② 명예기자 위촉에 따른 제반사항은 사업위원회에 일임한다. 단,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.
③ 본 회에서 위촉한 명예기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내용을 제공한다.
- 위촉 통지서
- 위촉장 및 부상 (5만원 상당의 상품권)
- 활동비
- 활동종료 후 학회장 인증의 활동증명서 발급

제 3 조 (활동비의 종류)
활동비는 원고료, 일비, 운임으로 한다.

제 4 조 (활동비의 계산)
활동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. 다만,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제 5 조 (활동비의 지급 기준 등)
① 원고료는 명예기자 활동(기업 등 탐방) 후 활동건수에 비례하여 원고가 제출되어야 하며, 제출된 원고가 기사로 채택될 경우 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한다.
- 명예기자 1인당 활동기간 내 활동건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한다.
-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, 원고(사진 포함)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.

② 일비 및 운임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고, 활동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
③ 제5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주소지내(시/도 기준) 활동의 경우에는 15,000원을 지급한다.

부칙
1. (제정)본 규정은 2020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제 1 호 <제정 2020. 04. 11.>

활동비 정액표

원고료	일비	운임			
	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버스운임
30,000원 (채택 원고 편당)	15,000원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 (이코노미)	실비 (일반)

*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.
* 자가용을 이용하여 활동한 경우 운임은 활동구간 버스운임(일반 정액)을 기준하여 지급한다. 단, 활동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또는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표 제2호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,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.
* 별표 제2호의 양식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 기준한다.

별표 제 2 호 <제정 2020. 04. 11.>

CSSK 명예기자 활동비 증빙 내역

방문일자	0000. 00. 00.()	성명	OOO	(서명 또는 인)
방문기관	OOOO 연구소 (00시 00구 소재)			
금액	일금 000원	・일비 : 15,000원 ・운임 : 000원 × 왕복 = 000원		

< 증빙자료 >